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0,896,658	20,126,900
일반회계	653,007,413	19,590,222
특별회계	17,889,245	536,677
기타특별회계	17,889,245	536,67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67,430	89,023
의료급여특별회계	1,091,204	32,736
자활기금특별회계	1,575,608	47,268
주택사업특별회계	26,991	81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5,847	2,875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16,521	6,49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631,992	18,960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4,815,030	144,451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533,929	76,018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926,141	87,7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01,700	27,051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	106,852	3,20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